

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5고정679 저작권법위반
피 고 인 A
검 사 원충연(기소), 장민아(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남을석(국선)
판 결 선 고 2026. 7. 8.

주 문

공소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공소사실

피고인은 의정부시 B, 지하 1층에서 'C'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.

누구든지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. 12. 23. 20:46경 위 장소에서, 저작권자인 D, E 작사·작곡의 'F' 노래를,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G에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,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공연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.



2. 판단

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.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.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.

판사 조종현 _____